울산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90

제출일자 : 2009. 6.
제 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포상금 지급에 포상금 신청 시기 및 신청자가 한정되어 있는 등 포상금 집행의 애로사항과 지급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포상금 지급 기준(안 제3조)

○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
○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
○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
○ 도로·하천·공유수면 및 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 징수액의 100분의 5

나. 포상금 지급한도(안 제4조)

○ 미수금 징수 건당 30만원
○ 개인별 월지급액 60만원

다. 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5조)

○ 위원회는 지급대상,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심의

라. 지급의 신청절차(안 제7조)

3. 추진근거

가.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개선방안 권고(행안부)

나. 2009년 자치법규 전수조사·일제정비 계획

4. 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입법 예고 : 의견 없음(2009. 4. 20 ~ 5. 11)

나. 행안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함

울산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(이하"포상금"이라 한다)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대상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(별정직, 기능직, 임시직,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.)
2.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
3.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

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"특별공적"이라 함은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·관허사업제한·「조세범처벌법」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,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,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. 다만,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

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지급기준)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
2.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
3.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

분의 5

4. 도로·하천·공유수면 및 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 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 의 100분의 5. 다만, 전년도에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.
5.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. 다만,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.

제4조(지급한도)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1.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(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)

2. 개인별 월 지급액 60만원

제5조(지급 심사 등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포상금 지급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
2.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
3.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

제6조(대장 기록 등) 징수부서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인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인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, 정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포상금 지급신청)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제3조의 각 호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 1·2에 의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과장이 신청하여야 한다.

제8조(포상금 지급)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금융기관(체신관서 포함)에 개설한 계좌번호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9조(환수) ① 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②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기간은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로 하며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39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(제6조관련)

(단위 : 원)

징수월일	징수자		체납자			징수내역				징수확인(과장)	특별징수공적(사유)	포상금청구(지급액	지급일
	직	성명	주 소	성명	주민등록번호	년도기분	과세번호	세목	징수액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(제6조관련)

(단위 : 원)

구분	부과자(제보자)		발굴세액	납세의무자			납기	징수일자	징수확인(과장	포상금지급		
	직급(주소)	성명(주민등록번호)		주소	성명	주민등록번호				포상금액	지급일자	사유

【별지 제3호서식】

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(제7조관련)

구 분		건 수	징수(부과)금액 (원)			포상금 (원)	비고
			본세	가산금	계		
계							
과년도체납액 징 수	1 년차						
	2 년차						
	3년차이상						
숨은세원 발굴	미 등 기						
	탈루은닉세원						
	무단점용						

『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.

첨부 : 1. 과년도체납액 징수내역 1부
2. 숨은세원발굴 징수내역 1부

년 월 일

소속 (일반인의 경우 주소)
직급 (일반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)
성명 (인)
입금계좌 : 금융기관명 계좌번호

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 부표 1]

과년도체납액 징수내역

징수자 소 속 : 직 급 : 성 명 인

연번	징수월일	징수액							체납자		징수포상금		징수담당확인
		세목	년도	납기	과세번호	세액(원)			주소	성명	요율(%)	금액(원)	
						본세	가산금	계					
합계		건											

[별지 제3호서식 부표 2]

숨은세원발굴 징수내역

징수자 : 소속(일반인의 경우 주소) 직급(일반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) 성명 (인)

납기	숨은 세원발굴자(제보자)			세목(과목)	발굴세액	징수월일	건수	포상금액	납세의무 성립일	비고
	소속	직급	성명							

의 안 심 사 보 고 서

(의안번호 690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09. 6. 3(수)

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 : 2009. 6. 4(목)

라. 위원회 상정 : 2009. 6. 15(월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)

징수 포상금에 대한 지급대상·기준·지급한도 등 포상금 지급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여 체납세 등 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가. 포상금 지급 기준(안 제3조)

-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
-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
-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- 도로·하천·공유수면 및 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 징수액의 100분의 5

나. 포상금 지급한도(안 제4조)

- 미수금 징수 건당 30만원

● 개인별 월지급액 60만원

다. 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5조)

● 위원회는 지급대상,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심의

라. 지급의 신청절차(안 제7조)

5. 관련법규

○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개선방안 권고(행안부)

6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홍성춘)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•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

• 징수 포상금에 대한 지급대상, 지급기준, 지급한도 등 이의 지급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·보완하여

• 체납세 등 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•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기준을 1·2·3년차로 구분하여 징수액의 100분의1, 100분의3, 100분의5 등으로 각각 세분화하고

• 포상금 지급한도를 미수금 징수는 1건당 30만원, 개인별 월지급액을 6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,

• 또한,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대상, 지급기준, 지급한도에 대한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친후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이에대한 신뢰성 제고와 함께 현행 조례안보다 전반적으로 구체화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,

○ 행정안전부『세입징수포상지급조례 표준안』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○ 다만, 조례 안 제4조제2호에 규정된 개인별 월지급액의 한도액을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서는 100만원으로 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60만원으로 한도액을 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

○ 과년도 체납액 징수, 탈루된 취득세원 포착·발굴 등 최근(2008년도)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